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0가단249435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나5230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0가단249435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천

담당변호사 권오천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박동훈

변론종결 2022. 10. 27.

판결선고 2023. 1. 19.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8,800,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3. 1.

-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와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9. 9.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128,800,7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는 원고에게 128,800,7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그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7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와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9. 9.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179,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는 원고에게 1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포천시 D 대 1837㎡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 5억 원, 내부 인테리어공사 1억 2000만 원 등 합계 6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피고 회사에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6. 28. 이 사건 건물에 사용승인을 받고 2017. 7.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① 기존 금융기관에 제출했던 갑(피고 회사)과 을(원고)이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 총 공사금액을 제외한 모든 건축계약사항은 동일하다.
- ② 갑과 을은 도급 총 금액을 6억 2000만 원으로 정하되, 5억 원은 건축공사 금액이고 1억 2000만 원은 내부 인테리어 금액임. 부가세는 별도로 약정한다.
- ④ 공사 중 천정, 바닥, 기타 갑이 원하는 공사 중 설계도면에 없는 공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⑤ 추가 공사 필요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동생으로서 2018. 6. 8.부터 2019. 1. 14.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10. 18.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주식회사 F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C에게 주식회사 F에 대한 위 5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6억 8200만 원(6억 2000만 원 + 부가가치세 6200만 원) 및 추가공사대금채권 1억 1000만 원(1억 원 + 부가가치세 1000만 원) 등 합계 7억 92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6억 1280만 원만 지급받아 1억 792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있으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거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주식회사 F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피고 C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액인 1억 79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억 792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 원고는 증가한 연면적 부분에 관하여 서비스로 시공하였을 뿐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남아있는 공사대금채무가 없다.

3.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의 범위

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2017. 3. 10. G에게 공사대금 6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한 뒤 ① 1, 2층 벽체 및 계단실 석고보드 설치, ② 2층 마루 설치, ③ 벽체 및 기둥 무늬목 설치, ④ 배식구 다이 설치, ⑤ 덤웨이터 통로 개설 등의 공사를 시행케 한 사실, 원고는 2017. 5. 20. H에게 공사대금을 2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도급한 뒤 ① 바닥 및 계단, 주방 타일 설치, ② 천정, 보, 석고보드 관련 도장공사, ③ 목재부위 방염공사, ④ 바닥재(뉴크리트) 시공 등을 하게 한 사실, 원고는 2017. 5.경 주방에서 요리된 음식을 2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식회사 I와 공사대금을 9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간이화물용 승강기인 덤웨이터를 설치한 사실, 원고는 J를 통해 공사대금 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주방 트렌치(배수 관련 설비) 설치 및 방풍실 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위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한 사실, 2017. 6.경까지 인테리어공사가 이루어진 뒤 2017. 6. 28. 이 사건 건물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내장 인테리어공사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공사 현장을 방치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가공사대금 존부에 관한 판단

추가공사약정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서면에 따른 약정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여부, 추가·변경공사의 내용(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였는지 여부(도급인의 묵시적 지시나 합의),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추가공사약정의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서에 추가 공사 필요시 협의하여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공사대금은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산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시공도면의 연면적이 594.92㎡에 불과하였으나, 공사 과정에서 연면적이 70.18㎡ 증가하여 665.10㎡이 되어 연면적의 11.79%가 증가한 사실, 감정인 K는 외부 보강토 옹벽 및 펜스 시공, 1층 배면 증축, 1층 방풍실 위치 변경으로 증축, 2층 장애인 화장실로 변경의 추가공사가 있었고, 2017년 기준으로 추가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9,600,733원으로 산정된다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증가와 설계변경이 있음이 명백하고 추가공사의 내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으며, 그 액수도 전체 공사대금의 10% 가까운 금액으로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약정이 없이 원고가 공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가 추가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추가공사대금 59,600,733원을 추가공사대금으로 본다(위 감정가는 당초 계약상 ㎡당 공사대금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한 금액이라고 보인다).

다. 피고들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억 1280만 원 외에 2018. 9.경 L이 원고에게 5000만 원, 피고 회사가 (주)M N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50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은 2018. 9. 21. 원고 대표이사 O(개명 전 P)에게 'P Q공사'라고 기재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그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9호증의 1, 갑 제1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Q이 운영하는 R마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던 사실,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L은 R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 중 일부를 Q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송금하여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음으로 30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M는 2017. 1.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740만 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 착공일은 2016. 12. 20., 준공예정일은 2017. 5. 10.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M의 현장대리인 N은 피고 회사로부터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에 전기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위 공사는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건축주가 직접 도급준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는 (주)M와 피고 회사이고, 그 사이에 계약서 작성일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기 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M가 원고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가 (주)M에 지급한 돈을 원고에 대한 변제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성부분은 건축에 배정된 PF(은행기성)에 의하여 도급인, 수급인 상의하여 지불한다.'는 기재내용이나 위 확인서와 배치되는 N의 또다른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8,800,733원(최초 공사대금 6억 8,200만원과 위 추가공사대금 59,600,733원 합계 741,600,733원(=682,000,000원 +

59,600,733원)에서 기지급된 612,800,000원을 공제)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7. 24.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 채무 초과 상태의 피고 회사의 채권양도로 인한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피고 C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본다. 피고 C가 양수금을 전부 수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채권양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9. 9.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128,800,7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128,800,7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오소현